

보도자료

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
AND FINANCE

보도일시	2011. 6. 27(월) 16:00 이후		
배포일시	2011. 6. 27(월) 14:00	담당부서	국고국 국유재산과
담당과장	김금남 (2150-5150)	담당자	정다운 사무관 (2150-5168) 이영준 사무관 (2150-5152) 안태석 사무관 (2150-5156)

제목: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

□ '11.6.27(월) 15:00 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「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*(제4차)」가 개최되어 국유재산의 관리·처분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였음

* 기획재정부 장관(위원장), 8명의 차관급 정부위원 및 10명의 부동산·증권분야 전문가인 민간위원으로 구성(총 19명)

○ '11.4월 개정된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차관에서 장관으로, 당연직 위원이 각 부처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각각 격상되고 역할이 강화된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,

- 2012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(안), 유휴 행정재산 직권 용도폐지(안) 등을 심의·의결하였고,

- 국·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 추진계획 등을 보고받았음

※ 첨부 :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주요 의결 및 보고 사항

기획재정부 대변인

1. 2012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

□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달 및 운용

- 일반재산*으로 전환된 국유재산을 임대 또는 매각하여 조성한 자체수입(7,733억원)과 일반회계 전입금(2,261억원)으로 약 9,994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달

- 그 중 9,344억원은 청사·관사 등 공용재산** 취득비용으로, 나머지 620억원은 비축토지 매입에 각각 사용할 예정

* 당초의 행정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용도폐지 되어 매각·임대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재산

** 국가가 직접 사무용, 사업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

□ 지금까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여 왔던 공용재산의 취득 사업을 2012회계년도부터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함으로써,

- 건물의 안전 문제 등을 감안한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, 우선 순위에 따라 기금을 배분함으로써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

< 2012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달·운용 총괄 >

(단위 : 백만원)

조 달			운 용		
합 계	999,401	(100%)	합 계	999,401	(100%)
○ 자체수입	773,272	(77.4%)	○ 사업비	996,371	(99.7%)
- 관유물매각대	705,263	(70.6%)	- 공용재산 취득사업	934,371	(93.5%)
- 관유물대여료 등	68,009	(6.8%)	(계속사업)	823,029	(82.4%)
○ 정부내부수입	226,129	(22.6%)	(신규사업)	111,342	(11.1%)
- 일반회계전입금	226,129	(22.6%)	- 비축토지 매입사업	62,000	(6.2%)
			○ 기금운영비	3,030	(0.3%)

2. 유휴 행정재산 직권 용도폐지

□ 국유재산법 제22조제3항에 근거, 미활용 되거나 무단 점유 중인 공용재산 중 총 30필지(64,359㎡)를 기획재정부가 직권 용도폐지하기로 의결하였음

- '09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각 부처의 유휴 행정재산* 중 활용계획을 제출하였거나 이미 부처에서 용도폐지 한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30필지를 직권으로 용도폐지

* 국가가 직접 공원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청사 등 사무용·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

< 직권 용도폐지 및 총괄청 인계 대상 재산 >

	교과부	법무부	행안부	문광부	농림부	경찰청	산림청	해경청	계
필지	5	3	1	6	6	7	1	1	30
면적(㎡)	2,675	7,071	488	13,401	8,458	1,409	29,573	1,284	64,359

- 직권 용도폐지 후 행정재산으로 활용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는 각 부처에 수요 조사 후 필요 부처에 사용 승인*하고,

-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각하여 민간이 활용하도록 할 예정

* 행정재산을 포함한 모든 국유재산의 관리·처분권은 원칙적으로 총괄청인 기획재정부가 행사하고, 행정재산 사용권을 필요한 범위에서 중앙관서의 장에게 승인(국유재산법 제8조)

- 향후 정기적으로 행정재산의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휴 행정 재산에 대한 직권 용도폐지를 추진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계획

3. 국·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 추진계획

□ 국가와 지자체간 상호점유* 재산(15,456필지, 2조 5,905억원)에 대하여 상호점유 해소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음

* 토지의 소유자는 국가이나 지상의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여, 국가 소유 토지를 지자체가 점유·사용 또는 그 반대의 경우

- 그동안 위 상호점유 재산에 대한 재산권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, 국가와 지자체 사이에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발생
-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기획재정부는 '10년 지자체(서울시, 부산시, 경기도)와 MOU를 체결하고, 상호점유 현황을 조사

< 국·공유재산 상호점유 현황 >

구 분		서울	경기	부산	기타	합계
지자체 점유 국유지	필지수	613	3,564	433	9,125	13,735
	면적(㎡)	851,331	2,030,753	979,300	43,281,542	47,142,926
	대장가액(억원) (비중, %)	5,370 (33.8)	2,247 (14.1)	3,878 (24.4)	4,393 (27.7)	15,888 (100)
국가 점유 공유지	필지수	370	257	116	978	1,721
	면적(㎡)	390,469	2,325,240	27,845	3,823	6,565,697
	대장가액(억원) (비중, %)	6,737 (67.3)	1,277 (12.7)	530 (5.3)	1,472 (14.7)	10,016 (100)

- '11년 중에 서울시 소재 재산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상호점유 해소를 추진하고 '12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
- '92년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국가와 지자체간 국·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통하여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,
- 변상금 부과 등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간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